

한경협

ESG Bulletin

2024. 03 | 제 1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코앰파트너스 이한경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지난 3월 15일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실사지침(이하 CSDDD)'이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 12월 유럽의회, EU이사회 및 EU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합의한 후, EU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을 앞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13개국이 기권의사를 표명하면서 좌초될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장국 벨기에가 규제 적용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한 후 승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원안에서 EU 회원국 내 직원수 500명 초과, 전세계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인 기준에서 직원수 1천명 초과, 글로벌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초과인 기업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공급망실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28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몇몇 회원국이 이미 공급망실사법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EU 배터리규정('24.2 시행)에서도 '25.8월부터 유사한 형태의 공급망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EU와 상당한 교역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체감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고문에서는 올해 1월 공개된 최종 합의문의 핵심내용을 통해 준수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자 한다.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

구분	프랑스 기업경계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	EU 배터리규정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실사 적용 시기	'17년부터 시행 중	'23년부터 시행 중	'25년 8월 18일 이후부터 EU시장에 배터리를 출시 또는 서비스하는 경우 적용	'24.3.15 지침 발효 * '28년부터 기업 규모 및 분야에 따라 단계별 적용
실사 적용기업 (실사 주체기업) 판별 기준	회계 연도	회계 연도	회계 연도	회계 연도
	적용 기준	적용 기준	적용 기준	적용 기준
회계 연도	최근 2개년도 회계 연도 모두 적용 기준 만족	최근 회계연도 적용 기준	최근 회계연도 적용 기준	최근 2개년도 회계연도 모두 적용 기준 만족
적용 기준	프랑스 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거나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종 무관 모든 회사	독일에 본사, 자회사,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둔 기업 (2023년~)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종 무관한 모든 회사 (2024년~)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한 업종 무관한 모든 회사	배터리를 EU시장에 출시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운영자 중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기업 또는 그룹 단,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 배터리가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사용중인 경우 해당 경제운영자는 실사 의무 적용에서 제외	EU 기업 '28.1 평균 직원수 5,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9.1 평균 직원수 3,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30.1 ① 전 세계 순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 평균 직원수 1,000명 초과 ② 로열티수익 2,250만 유로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8천만 유로 초과 非 EU 기업 '28.1 EU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9.1 EU내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30.1 ① EU내 순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② EU내 로열티수익 2,250만 유로 초과 & EU내 순매출액 8천만 유로 초과
실사 범위	실사 대상	실사 대상	실사 대상	실사 대상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실사 대상	적용 기업의 직·간접 공급 업체	원재료 채굴부터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 내 모든 기업	적용 기업에 배터리 원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 (자회사, 하청업체 포함)	적용 기업의 활동사슬 범위(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폐기)내 에 속한 기업(자사,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회사 포함)
실사 항목	인권, 환경	인권, 노동, 환경	인권, 환경	인권, 노동, 환경, 기후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공급망 내 기업활동이 인권·환경에 부정적 영향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부정적 영향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사범위는 자사, 자회사, 공급망 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협력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하기 명시된 환경,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평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출처: CSDDD 최종 합의안(2024.01), 31p

환경

- ▶ 환경오염(대기·수질·토양·해양·등)
- ▶ 기후변화
- ▶ 폐기물
- ▶ 생물다양성
- ▶ 야생 동·식물 교역
- ▶ 자연유산 및 문화재 보호

인권

- ▶ 생명
- ▶ 자유 및 존엄성
- ▶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 ▶ 노동자 기본권
- ▶ 다양성 및 기회균등

* 출처: CSDDD 최종 합의안(2024.01), 392-416p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체계적이며 유효적인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급망 실사체계는 어떻게 구축하는가?

본 지침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실사의무를 기업정책 및 관리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사정책에는 기업의 실사방안, 대상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이행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대상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사업 활동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중요하거나 많은 사람 또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복원 조치에서 불구하고 이전의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향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부정적 영향이 규명된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협의,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네 번째, 공급망 실사 체계는 이해관계자(피해자,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정당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최소 12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실사 정책을 업데이트 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실사의무 이행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실사주체가 갖추어야 할 공급망 실사 환류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는 근본적으로 인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목적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EU 배터리법과 매우 유사하며, 그 내용은 하기와 같다.

< EU CSDDD와 EU배터리법에서 명시한 실사체계 구축 비교 >

	EU CSDDD('23.12 최종안 기준)	EU 배터리법
1단계 공급망 실사 내재화	기업의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실사 내용 통합	좌동 제3자 검증*
2단계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	인권(사회) 및 환경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력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 필요시 우선순위 결정*	좌동
3단계 대응조치 시행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 및 종식·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 위험도(빈도, 심도)가 높은 순으로 조치 시행*	좌동 국제공인 실사 지침에 따른 위험관리계획 수립*
4단계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부정적 영향이 발생 또는 가능성 존재시 개인/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조기 경보 위험 인식 시스템 및 시정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5단계 실사조치 모니터링·점검	실사 조치의 이행 여부 및 효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모니터링	좌동 실사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감사*
6단계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사의 내용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 유럽 전자통합공시시스템에 동일 정보 제출*	좌동 시장감시당국 또는 국가당국에 실사 준수 증빙자료 제출 및 직접 구매자에게 실사 정책에 따라 획득한 정보 제공*

*표시는 해당규제에서만 요구되는 항목

실사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객사의 관점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스스로 고객사의 공급망 관점에서 우리 사업장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중대한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우선 자사 사업장이 고영향 부문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3월 15일 발표된 수정안에서는 고영향부문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위 초안과 이사회 수정안에서 언급한 고영향 부문(섬유, 가죽,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 광물자원의 채굴, 기초금속 등)에 자사 업종이 해당이 된다면 집중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급망실사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원칙이 바로 해당 국가의 규제 준수일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경영에 내재화해야 할 주요 환경협약들이 ‘부속서 I. PART II’에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협약을 이미 국내법으로 제정,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급망실사를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의 환경, 인권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 EU CSDDD 최종합의안에서 명시한 국제협약 >

환경 부문		인권 부문	
환경오염 (대기·수질· 토양·해양 등)	미나마타 협약(수은)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로테르담 협약(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 람사르 협약(습지 보전) 해양환경보호 관련 협약(MAPOL)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생명, 자유 및 존엄성	생명권 보장,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금지, 자유 및 개인의 안보,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기후변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공정한 임금 지불,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합리적인 근로시간 보장,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
폐기물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	아동의정신적/육체적 건강보호, 최저연령준수(15세미만), 아동노동금지, 노예 및 인신매매 등과 같은 강제노동 금지
기후변화	바젤협약	노동자 기본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차별 금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 의정서	다양성 및 기회균등	불평등한 임금지불 금지, 민족/인종/피부색/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기후변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 협약, 최저연령협약,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협약, 강제노동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조직 및 단체 협상권 협약, 평등임금협약, 차별금지협약	
자연유산 및 문화재 보호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출처: CSDDD 최종 합의안(2024.01), 392-416p

또한 우리나라 수출산업체의 경우 환경과 인권이 매우 취약한 국가로부터 목재, 섬유, 광물 등 원부자재 조달을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 기업이 개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 또는 계약조건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즉, 실사주체)의 1차 협력사로서 명확한 실사 대상이 되고, 1차 협력사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통제해야 한다면 관리책임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생각보다 공급망 실사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실사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며, 기업 스스로 부정적 영향을 정의하고, 예방,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투자가 동반될 수도 있다. 개도국에 위치한 협력사의 인권, 환경이슈도 책임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대응에 실패한 실사대상 기업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소한 우리는 실사주체인지 실사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고, 그에 따라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실사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중요 점검사항

- ① 각 법에서 명시한 조건에 근거, 자사가 공급망실사 주체인지 명확히 파악한다.
- ② (실사주체일 경우) 자사에 적합한 공급망실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CSDDD에서 명시한 6단계 절차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③ (실사주체일 경우) ②를 수행함에 있어 전과정 밸류체인을 대상으로 고위험 영향을 정의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실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고위험영향은 민감업종, 사고 발생가능성, 심각성, 복구비용 등 여러 요소로 자체적으로 판단
- ④ (실사대상일 경우) 실사주체가 정한 정책에 따라 실사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현행하는 실사 프로그램(RBA, EcoVadis 등)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를 한다.